

의안번호	2220540
의 퇴 인	엄태영 의원
회 답 일	2026. 9. 4.
추계번호	26B4063

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(사후관리 등)	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서·벽지 및 인구감소지역 등 취약 농촌지역의 농업기계 수리를 위하여 이동 및 고정 수리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, 수리소 운영 및 부대시설 설치·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	재량규정

II.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(사후관리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조¹⁾ 및 제11조²⁾에 근거하여 농업 기계의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

-
- 1) 1) **제4조(자금 지원)**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에게 농업기계의 개발, 생산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2) **제11조(사후관리 등)** ① 제4조에 따라 지원되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·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업기계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고, 기술 또는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.
 ②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업(業)으로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.

나, 사후관리에 필요한 수리소 설치에 대한 지원 근거는 없음

- 참고로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민·관 합동으로 매년 봄, 가을철에 전국 농업기계 순회 수리 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, 2026년 가을철 순회 수리 봉사가 8월 18일부터 9월 11일까지 진행될 예정임

- 개정안은 농업기계 정비 취약지역(도서·벽지 및 인구감소지역 등) 농업인의 영농 편의 증진을 위하여,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동 및 고정 수리소를 직접 설치·운영하거나 전문 기관·법인·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, 이에 필요한 수리소 운영 및 부대시설 설치·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
- 개정안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동 및 고정 수리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설치·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수리 차량·장비 구비, 시설 설치,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개정안은 지원 대상 농촌지역의 세부 범위, 이동·고정 수리소의 설치·운영 방식, 지원 대상 수리소 개소 수, 운영 및 지원 범위·절차·방법 등의 핵심 세부 사항을 모두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사업 추진 규모 및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법안 시행에 따른 재정 소요를 합리적으로 추산하는데 한계가 있음
-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위진수	예승우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위진수	02-6788-4650	wjinsu@nabo.go.kr